

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(의안번호 제45호 2003. 12. 6)

총 무 위 원 회

2003. 12. 13(토)

1.심사경과

가. 2003. 12. 4 : 사천시장 제출

나. 2003. 12. 4 : 총무위원회 회부

다. 2003. 12. 6 : 제8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의결

2.제안설명요지(총무과장 김영고)

가. 개정이유

- (1) 행정조직운영의 자율성 제고 등 지방자치권한 강화를 위해 표준정원제가 대폭 개선 시행되고, 도로, 교통, 관광 등 지역여건 변화로 행정수요증대, 교량 가설로 인한 불필요 기구 대두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 지원 체제로 정비하며,
- (2) 보좌, 보조 등 참모기능이 아닌 「해양수산담당관,문화공보담당관」을 기능에 맞게 과로 개편, 국으로 조정하고, 국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리정보체계(GIS)효율적 추진과 전자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전산·통신·지리정보 등 분야를 일원화하여 「정보담당관」을 신설함.
- (3) 특히 관광개발 및 문화재 관리 효율화를 위해 「문화·관광」을 일원화하였으며, 기능한계에 있는 사업부서의 기능 일부를 분산하는 한편, 담당관, 국의 부서계서를 업무의 연계성과 기능 등을 고려 재조정하기 위함.
- (4) 또한 업무의 성격과 중앙-도-시군과의 연계성, 시민 이해와 편의성 등을 고려, 부서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, 기능 통합과 이관 등 업무 조정에 따라 본청 및 직속기관, 사업소, 출장소 등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(1) 부서별 기능 및 명칭을 조정함(안 제3조 내지 제7조)

가) 「기획감사담당관」을 기획, 공보, 감사의 총괄 기능인⇒「기획담당관」으로 하고, 「문화공보담당관」, 「해양수산담당관」을⇒「문화관광과」, 「해양수

산과」로 명칭 변경하여 총무국, 지역개발국으로 편제

나) 「민원정보과」, 「지적과」를 통·폐합하여⇒「민원지적과」로 하고, 민원정보과 정보통신업무와 지적과 지리정보업무 등 정보분야 일원화로 전자정부에 대응하기 위해⇒「정보담당관」신설함.

다) 기능 한계에 있는 건설과의 도로업무를 분리, 교통과와 합하여⇒「도로교통과」로, 「위생환경사업소」를 기능과 업무성격에 맞게⇒「환경시설사업소」로 명칭 변경

라) 교량 가설로 인한 기능 쇠퇴 기구인⇒「녹도출장소」폐지

(2) 담당관, 국의 부서계서 조정(안 제3조 내지 제7조)

가) 부서조정으로 인한 담당관, 국소관의 부서체계는 부서간의 연계성과 사업부서, 지원부서의 기능 등을 고려, 부서계서 조정하였음

○ 담당관 : 기획감사담당관, 문화공보담당관, 해양수산담당관⇒기획담당관, 정보담당관

○ 총무국 : 총무과, 세무과, 회계과, 사회복지과, 민원정보과, 환경보호과, 주민자치과⇒총무과, 사회복지과, 문화관광과, 환경보호과, 민원지적과, 세무과, 회계과, 주민자치과

○ 지역개발국 : 지역경제과, 건설과, 도시건축과, 교통관광과, 지적과, 상하수도과, 녹지공원과⇒지역경제과, 해양수산과, 도시건축과, 건설과, 도로교통과, 상하수도과, 녹지공원과

(3) 기구 통·폐합과 부서간의 업무이관 및 흡수, 담당관, 국 소관의 부서 조정 등으로 인한 소관 사무 재조정(안 제3조 내지 제8조)

○ 담당관 : 기획담당관 ⇒공보업무, 정보담당관⇒전산, 통신, 지리정보

○ 총무국 : 문화관광과⇒문화관광업무, 민원지적과⇒민원, 호적, 지적업무

○ 지역개발국 : 해양수산과⇒해양수산업무

(4) 사업소 및 출장소 분장사무를 규정으로 이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함(안 제16조 및 제21조)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박명돈)

개정조례(안)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지원 체제 정비를 위해 부서별 기능 및 명칭을 조정하고, 부서조정으로 인한 담당관, 국 소관

의 부서계서는 부서간의 연계성과 부서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으며, 기구 통폐합과 부서간의 업무이관 및 흡수 부서 조정 등으로 인한 소관사무 재조정과 사업소 및 출장소 분장사무를 규정으로 이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시행령,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, 표준정원시행등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중개정규칙 시행지침,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 및 명칭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의 내용을 검토한 바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위원	질 의 요 지	답변자	답 변 요 지
최갑현 위원 박종권 위원	○도시건축과는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도시건축과를 도시과와 건축과로 분리하는 것이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처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.	총무과장 김영고	○도시건축과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1개 담당을 증설하였으며, 추후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기구개편시 검토하겠음.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: 해당안건을 보류하였다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추후 다시 상정하여 심사를 해야 함.